

2022년 입주희망자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

1. 입주 신청 기간 : 입주희망월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 2022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2년 2월부터 신청 가능

2.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 청 가능; 임시 입주허 용)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신청 제한		①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서울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③ 입주예정일이 BK생활관 직전 퇴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④ 대학원생에 한하여 관악학생생활관의 BK생활관 거주 경험이 있는 자 ⑤ 교원 및 연구원에 한하여 관리위원회 심의에 의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등록절차		통합행정 시스템 신청 매뉴얼에 따라, 입사신청→입주신청을 진행함		
신청 기간		입주희망월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발표 일시 및 방법		공실 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년 (교원 및 연구원은 임용기간 유지 시, 대학원생(연구생)은 학적 유지 시) ※ 거주 연장 기간은 운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 - 대학원생 1회, 교원 최대 총 거주 기간 7년, 연구원 총 거주 기간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비전임 교원 구분(근거: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 전일제: 강의교원, 연구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 비전일제: 겸임교원, 외래교원
 -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 초빙교원, 객원교원

3. 생활관비 및 할증료(2022.03.01.시행 예정)

(단위: 원)

A동(가족실)						
보증금	관리비	할증료 (거주 연장 승인 시)		부가금 (기간 만료 이후 연장 승인 없이 거주 시)		
		3년 초과 4년 이하 (20%)	4년 초과 (40%)	3년 이하 거주 세대	3년 초과 4년 이하 거주 세대	4년 초과 거주 세대
1,890,000	633,100/월	126,600/월	253,200/월	1,200,000원/월	1,326,000/월	1,452,000/월

(단위: 원)

B동(스튜디오)						
보증금	관리비	할증료 (거주 연장 승인 시)		부가금 (기간 만료 이후 연장 승인 없이 거주 시)		
		3년 초과 4년 이하 (20%)	4년 초과 (40%)	3년 이하 거주 세대	3년 초과 4년 이하 거주 세대	4년 초과 거주 세대
1,194,000	399,900/월	79,900/월	159,900/월	600,000원/월	679,600/월	759,200/월

- 입주 해당 월의 경우 입주일에 따라 관리비가 상이
- 「관악학생생활관 시행세칙」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고 퇴거 완료일까지 부가금을 부과한다

4. 유의사항

1) 신청

대학원생은 본인과 배우자 2인이 B동(스튜디오)에 거주 할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동반 가족사항에 배우자 정보를 입력해야함

2) 입주 자격 상실

- ①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 제출과 관리비 납부를 모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입주자격 상실
- ② 서류 제출 시, 위장전입 또는 입주자격, 동반거주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주 자격 상실
- ③ 거주하는 동안 퇴거대상자 관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진 퇴거해야 하며 적발 시 즉시 강제 퇴거 조치 됨
- ④ 호실 무단양도 및 대리입주로 적발될 경우, 즉시 강제 퇴거 조치

구비 서류 안내

- 입주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기준**으로 발급
- 내국인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서울특별시 재산세(전체) 과세(납세)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과세연도는 2년분을 설정하여 발급받아야 함
- 구비 서류를 외국에서 발급 받을 경우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만 유효함

□ 상황별 제출 서류

○ 신청 시

1.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A동(가족실)을 신청할 경우

-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의 여권 사본 각 1부

2.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B동(스튜디오)을 배우자와 같이 거주할 경우

-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증명서 + 가족의 여권 사본

3.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B동(스튜디오)을 단독 거주할 경우

-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외국인 대학원생(연구생 포함)이 B동(스튜디오)을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증명서 + 배우자의 여권 사본 + (해당자) 배우자의 재학 관련 증명서

5. 내국인 교원 및 연구원

- 본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또는 이혼일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 것만 제출

6. 내국인 교원 중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본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속기관의 연구년 활용 증빙 서류(소속기관 직인 포함)**
※ 미혼 또는 이혼일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 것만 제출

7. 내국인 교원 중 초빙교원, 객원교원의 경우

- 본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속기관의 전일제 교원 증명 서류(소속기관 직인 포함)**
※ 미혼 또는 이혼일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 것만 제출

○ 입주 시

1.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필수 항목: 흉부 X-ray 검사)
-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2. 유의사항

- 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관련 상세 안내 사항은 붙임 2 참조
- 건강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유효
- 외국인의 경우 'BK Residence Halls Health Certificate(Form)'을 의료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제출 가능
※ 단, 병원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만 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전화 02-881-9038)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안내

1. 건강진단서 관련 안내

- 1) 진단서 유효 여부
 - "진단서", "건강진단서"로 발급받아야 함
 - 결과서, 소견서, 통보서, 확인서 등 제출 불가
 - 보건소, 종합병원, 내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기관명칭, 기관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종합 판정란 정상자에 한해 입주 가능
- 2) 검진 항목
 - 결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흉부 X-ray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의료 기관별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음(필요 검진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 3) 진단서 유효기간 : 입주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유효

2. BK Residence Halls Health Certificate (Form) 작성 방법(외국인)

- 1) 필수 검진 항목: 1번 항목 + 2번 항목 중 PPD 또는 Chest X-ray는 반드시 포함
- 2) 유의사항
 -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증명서 발급하기 어려울 경우, Health Form으로 대체 가능
 - Health Form은 병원기관에서 작성 후 병원기관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직인을 받아야 함

3. 홍역예방접종 증명서(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 관련 안내

- 1)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증명서' 출력
- 2) 접종 사실 확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만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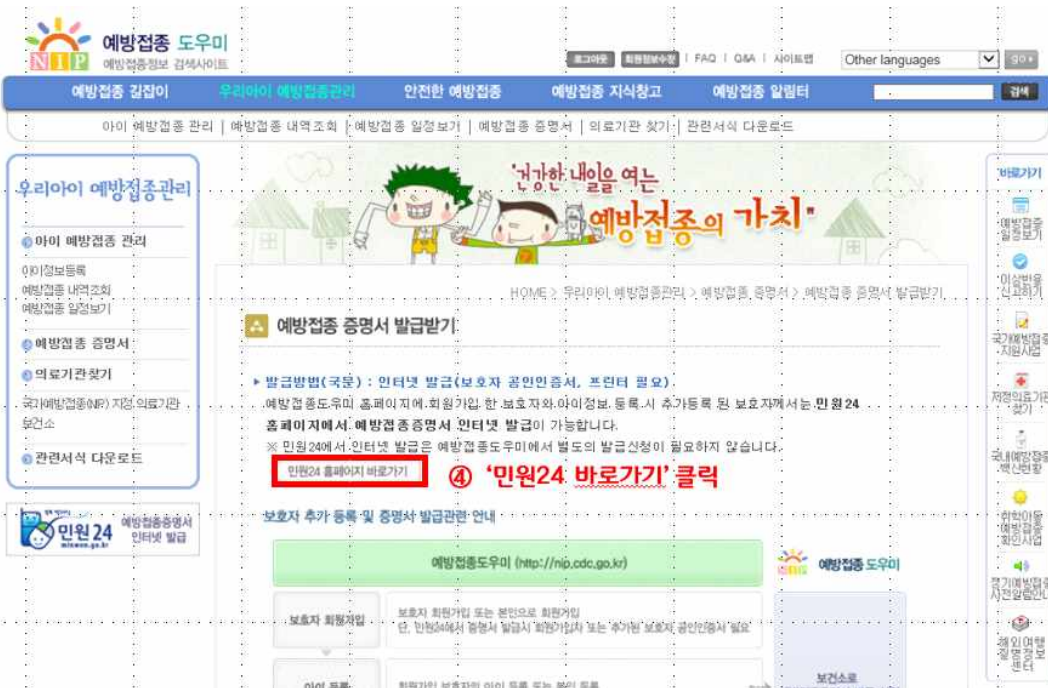
구분	제출 서류
홍역 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접종 사실은 있으나 내역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항체 검사를 실시한 후 '홍역항체검사 결과서' 제출 ※ 접종한 병원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홍역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접종 사실이 없는 경우(미접종자)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홍역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 미접종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 전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접종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3)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방법(접종 사실 확인 방법)

①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접속 > 회원가입 > '예방접종증명서발급' 클릭



② 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



③ (민원24 홈페이지) '즉시발급민원' 클릭 > '예방접종증명'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Minwon24 homepage with a navigation bar. On the left, there's a '즉시발급민원' (Immediate Issuance) button. On the right, a table lists various services. A red box highlights the '예방접종증명' (Vaccination Certificate) service, and a red arrow points to it from the '즉시발급민원' button.

번호	민원사무명	온라인신청	소관부처	수수료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	안전행정부	무료
2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열람) 신청	신청	국토교통부	무료
3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교부 신청	신청	국토교통부	발급 3000 원할 30년 종인소유자
4	지적도(임야도)열람 등본신청	신청	국토교통부	무료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	국토교통부	초료로 장
6	지방세특별차세증명	신청	안전행정부	초료로 장
7	자동차 등록증(부속본)발급,열람신청	신청	국토교통부	무료
8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청	안전행정부	무료
9	병적증명서발급	신청	방위청	무료
10	출입국 사실증명	신청	법무부	무료
11	농지관리부 등본교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무료
12	예방접종증명	신청	보건복지부	무료
13	개발용지가 확인	신청	국토교통부	초료로 장
14	문건등록증명발급	신청	경찰청	무료
15	공동주택가격 확인	신청	국토교통부	초료로 장
16	국립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	신청	보건복지부	무료
17	초등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신청	교육부	무료
18	검정고시 합격증명	신청	교육부	무료
19	검정고시 성적증명	신청	교육부	유료
20	국가대소선고 사실증명	신청	법무부	무료
21	통통학교 성적증명	신청	교육부	무료

④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증명서 출력

The screenshot shows the '예방접종증명' (Vaccination Certificate) application form. A red box highlights the form, and a red arrow points to the '민원신청하기' (Apply for Service) button. The form includes fields for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and '성별' (Gender). It also has checkboxes for '예방접종' (Vaccination) and '예방접종' (Vaccination) status.

예방접종증명

관계: [세대주] 성명: [] 생년월일: [] 내 할 일

신청인: []

교부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접종구분: 전체 필수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 개별선택

예방접종: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유행성 뇌막염 풍진 소아마비 홍역

기타예방접종: 신종우근골절염 인플루엔자 사형간염 광견 콜레라

수령방법: 로터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협토프시라증

수령방법: []

신청일: 2014년 11월 18일

⑦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 민원바구니에 담으신 화면에 걸쳐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저장은 최장은 일주일동안, 비회원은 로그인후 종료시까지 후편됩니다.

민원신청하기 | 민원바구니담기 | 임시저장 | 취소

⑤ 증명서 출력 및 접종 내역 확인

문서확인번호: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19 년 월 일
		성별 Sex	여
주 소 Address			
접 종 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자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MR	1	2001년 6월 20일	기관미상
- 이 하 나 백 -			
↓			
<p>① 84년 이전 출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차수가 2차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p>② 85년 이후 출생자</p> <p>가. 접종일자가 2000년 이후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차수가 1차로 표기되어 있어도 무방함 - 해당 서류 제출 가능 <p>나. 접종일자가 2000년 이전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차수가 2차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2차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불가 - 2차 접종 사실 확인 또는 추가 접종 후 '홍역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p>「감염병의 접종하였음을 We hereby ectious Dise e above-ment</p>			
<p>※ 이 증명서의 접종내역은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접종내역입니다. ※ 증명서에 누락된 내역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민원24(minwon.go.kr)의 민원넷발급문서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해단의 바코드로도 전위확인(스캐너를 문서확인프로그램 설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출력 방법

① '민원24' 접속 및 로그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② '세목별과세증명' 신청



③ 미과세증명으로 신청

민원신청

인터넷 신청 전체 민원

민원 신청서 작성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 226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 227조의2(공전자기기록 위조·변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문서의 납세의무자 주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 각 시군구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구분에 따라 입력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의 납세사실확인은 **수납방법에 따라 일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세목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등이며 서식을 모두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야 과세(납세)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1개 시군구 단위로 발급이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시군구의 과세내역이 병행표기된 증명서는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계좌, 신용카드)납부인 경우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문의전화번호

세목별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세목별납세증명(방문수령), **미과세증명**

'미과세증명' 클릭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 신청

신청내용

구분* 개인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전체표기 일부표기

개인* 성명* 신왕인 생년월일*

주소* 기본주소 주소검색 상세주소

과세연도* 2018년 ~ 2019년

사용목적*

명업장

상호

명업종목 검색

명업주소 기본주소 주소검색 상세주소

수령방법

수령방법* 검색 온라인발급(본인인증) 수령기관선택 검색

발급부수* 1부

신청일 2019년 01월 17일

민원신청하기 | 민원바구니담기 | 임시저장 | 취소

④ 과세건물지 주소선택(ex.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로 지정) > 민원신청하기 클릭 과세연도: 2년분 설정

민원신청 문의전화번호

세목별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세목별납세증명(방문수령), **미과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 신청

신청내용

구분* 개인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전체표기 일부표기

개인* 성명* 신왕인 생년월일*

주소* 기본주소 주소검색 상세주소

과세연도* 2018년 ~ 2019년

사용목적*

명업장

상호

명업종목 검색

명업주소 기본주소 주소검색 상세주소

수령방법

수령방법* 검색 온라인발급(본인인증) 수령기관선택 검색

발급부수* 1부

신청일 2019년 01월 17일

민원신청하기 | 민원바구니담기 | 임시저장 | 취소

주소검색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를 모르면? www.jaso.go.kr

올바른 민원신청을 위해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관악구, 주소 관악로1

[입력방법] 건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읍면동 명칭을 입력하지 않음.
예) 세종대로161, 남산로17번길47 (숫자여 쓰기)
※ 2014.1.1부터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해야 함.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

선택한 도로명주소(법정동)내내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신림동)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 검색결과 : 12건

민원처리기관(법정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신림동)

※ 도로명주소의 특성상 1개 이상의 행정처리기관주민센터, 구청 등지 존재 할 수 있습니다.목록에서 민원처리를 요청할 기관을 선택해주세요.

⑤ 재산세항목 모두 선택

민원안내
민원신청
확인서비스
나의생활정보
이용안내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민원신청

인터넷 민원신청

- 인터넷 신청 전체민원
- 인터넷 발급민원
- 즉시 발급민원
- 수수료 감면민원
- 인터넷 열람민원
- 법인/재외국민/외국인민원

민원폐기저지서비스

어디서나 민원

기업지원 전용창구

자주찾는 민원정보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전입신고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병력증명서
- 토지(임야)대장열람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지적도(임야도)열람 등본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알면 도움되는 서비스

금융잔단 컨설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동차 검사 예약
소비자 신고센터 신고 접수
금융주소 한번에 변경

인터넷 신청 전체 민원

홈 > 민원신청 > 인터넷 신청 전체 민원

민원신청서작성 > 민원바구니확인 > 수수료납부 > 신청내역확인

민원신청내역 수정

미과세 대상 목록:민원24 - Internet Explorer

http://www.minwon.go.kr/minwon/AA040_pcpup_locltax_migwase_info_list.jsp?elementID1=

<input type="checkbox"/>	주인세(법인세할분)
<input type="checkbox"/>	주인세(농업소득세분)
<input type="checkbox"/>	주인세(특별징수분)
<input type="checkbox"/>	주인세(재산부(구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건축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선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항공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토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주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재산세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이륜차)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주행분)
<input type="checkbox"/>	노역소득세

·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 민원바구니에 담으면 한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저장은 회원은 일주일동안, 비회원은 브라우저 종료시까지 보관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민원바구니담기
삭제

바로가기

- 프로그램내려받기
- 통합설치
- 발급불가표면터목록
- 자주찾는 일본
- 민원24마라하기

· e하나라도 민원

· 무인민원 발급안내

· 인하기 대기전단

· 국민인증서등록안내

홍보동영상

고객센터

민원24 서비스 이용문의

09:00~18:00(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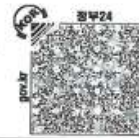
1588-2188

↑ 위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샘플

문서확인번호

1/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 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서류제출			
과세대상 Tax Objects											
세 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 액 Tax Amount		비 고 Remarks	
서울특별시 2018 ~ 2019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선박), 재산세(항공기),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재산세(기 타), 공동재산세 과세(납세) 사실 없음											
수 수 료 전자결제 민 원		위와 같이 과세(납세)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 Address(Business Office)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